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5가합548139(본소), 2015가합582825(반소) 판결
[손익정산금 청구의 소 · 매매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한국무역보험공사

4. 한국수출입은행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보열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철휘

피 고 1. 주식회사 D

2. 주식회사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익현

변 론 종 결 2018. 9. 12.

판 결 선 고 2018. 10. 3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74,51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7/10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100,631,312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게 118,711,916원,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67,699,6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게 1,687,797,243원,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1,365,984,1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주식회사 E(주식회사 F와 합병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E'이라 한다)은 원고 A에게 312,953,473원,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253,282,4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533,736,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채권금융기관협회의 자율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선박건조, 수리, 개조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어 2010. 12. 3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정한 G의 채권금융기관들이다.

2) 신규수주의 감소, 선박건조비용의 상승 등으로 G의 재무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을 포함한 G의 채권금융기관들은 2010. 7. 16.경 G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이하 ‘이 사건 자율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B를 주관은행으로 정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G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였다. 이 사건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채권금융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G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채권금융기관운영협약 제2조를 준용하고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채권금융기관’이란 G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제공한 은행으로서 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및 그 승계인을 말한다.

② ‘주관은행’이란 B를 말한다.

③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 G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을 말한다.

제3조(구성) G에 대한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붙임1]과 같이 협의회를 구성한다.

제5조(업무 및 기능)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협약의 제·개정과 G의 경영정상화 추진 관련 채권 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의결방법)

① 협의회 의결은 총 신용공여의 3/4 이상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의결방법은 협의회를 소집하여 직접 의결하거나, 서면결의에 의한다.

제8조(준용)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 운용방법 및 절차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협약’,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2010. 7. 16.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속기한) 이 협약은 G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기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나. 공동관리절차의 진행경과

1) 이 사건 협의회는 2010. 7. 20.경 제1차 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의 G에 대한 채권의 상환기한을 2010. 10. 15.까지 유예하고,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의 손익정산은 2010. 7. 15.을 기준일로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2010. 7. 28. 제2차 협의회에서 주관은행을 원고 A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협의회는 2010. 8. 27. 제3차 협의회에서 G에 긴급운영자금 80억 원(원고 A 고유 분담 23억 원, 추가 분담 57억 원) 및 기타 외화지급보증 약 164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손익정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G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처리기준(이하 '이 사건 처리기준'이라 한다)'을 따르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피고(반소원고)는 위 신규자금지원 의결에 반대하고 2010. 9. 3. 위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구 기촉법 제24조 제1항 등에 따라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3) 이 사건 협의회는 2010. 10. 12. 제4차 협의회에서 G에 운영자금 150억 원을 신규지원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2010. 11. 8. 제5차 협의회에서 2010. 7. 15.을 기준으로 신고된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하고 손익정산의 세부사항은 이 사건 처리기준을 따르며, G에 대한 유예된 모든 채권의 상환기한을 2012. 12. 31.까지 유예하고, G에 운영자금 200억 원을 신규지원하는 내용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피고들은 위 신규자금지원 등의 의결에 반대하고, 피고 D은 2010. 11. 18., 피고 E은 2010. 11. 22. 각 위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구 기촉법 제24조 제1항 등에 따라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협의회가 제3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이 사건 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손익정산

1-1. 용어의 정의

○ (손익정산) 공동관리절차 개시 이후 선박별 건조 시점의 차이 또는 신규 자금지원(RG 포함) 등으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각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제1차 협의회 소집일 전일자(2010. 7. 15.) 총 채권잔액(보증채무이행청구권 제외) 점유비율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간 손익을 상호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 (손익정산 기준채권액) 제1차 협의회 소집일 전일자 기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잔액을 말한다.

○ (손익정산 기준채권액비율) 제1차 협의회 소집일 전일자 기준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 잔액 대비 해당 금융기관의 채권잔액 점유비율을 말한다.

○ (손익정산 후 최종채권액) 손익정산시점에서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총 최종채권잔액에 개별

채권금융기관의 손익정산 기준채권액비율을 곱한 채권액으로, 손익정산 후 해당금융기관의 최종 채권잔액을 말한다.

*손익정산 후 최종채권액 = 최종잔액 + 손익정산금액

*최종잔액 = 손익정산 기준채권액 + 신규자금 - 회수금액 - 정산시점 선수금 등

○ (손익정산 금액) 손익정산 후 최종채권액에서 채권금융기관별 정산시점 최종채권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2. 손익정산 기준채권액 및 비율 산정

○ 손익정산 기준채권액의 산정 기준일자는 제1차 협의회 소집일 전일자 기준으로 적용한다.

1-3. 손익정산 시점

○ 협의회에서 공동관리절차 중단, M&A 등 손익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손익을 정산한다.

1-4. 손익정산 방법

○ 손익정산시점에서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총 최종잔액에 개별 채권금융기관의 손익정산 기준 채권액비율을 곱하여 개별 채권금융기관별 '손익정산후 최종채권액'을 산정한다.

○ '손익정산 후 최종채권액'에서 개별 채권금융기관별 정산시점 채권 최종잔액을 차감하여 '손익정산금액'을 산정하고, 주채권은행은 '손익정산금액'이 (-)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을 납부받아 '손익정산금액'이 (+)인 금융기관 앞으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채권양수도, 현금 정산 등 손익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 G의 파산 및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1) G은 2011. 6. 30. 창원지방법원 2011회합2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2. 1. 30. 회생절차가 폐지된 다음 2012. 2. 15. 같은 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2) G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이 사건 자유탁약 부칙 제2조에 의해 위 자유탁약이 종료되었다. 이 사건 협의회는 탈퇴한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 2011. 7. 7.을 기준으로 1차 손익정산을 실시하였고, 2013. 4. 30.을 기준으로 2차

손익정산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자유험약은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의 채권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제1차 협의회 소집일 전일자를 기준으로 채권잔액 점유비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손익정산을 예정하고 있고,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이 이 사건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고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손익정산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사건 자유험약이 정한 기준일인 2010. 7. 15.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이 이 사건 협의회에서 탈퇴한 시점, 즉 피고(반소원고)는 2010. 8. 27., 피고들은 2010. 11. 8.의 손익정산액을 산정하면, 피고(반소원고)는 287,042,843원, 피고 D은 3,053,781,378원, 피고 E은 566,235,957원의 정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정산금 계산 내역은 별지1 내지 3 표의 각 기재와 같다].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은 정산금을 지급받아야 할 원고들에게 그 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한국무역보험공사, B, 한국수출입은행에게, 피고들은 각 원고 A, 한국수출입은행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은 정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

이 사건 자유험약 및 처리기준 등이 정한 손익정산의무는 채권금융기관이 손익정산 당시에 이 사건 협의회 구성원 지위에 있는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 협의회에서 탈퇴하였고, 이 사건 협의회는 2011. 7.경 G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되자 남아 있는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 손익을 정산하였다.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은 이미 이 사건 협의회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손익정산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의 탈퇴 전 손익정산 시점이나 방법이 의결된 바도 없다. 설령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이 손익정산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시한 손익정산금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계산된 것이어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피고(반소원고)

한편 피고(반소원고)는 2010. 9. 3. 구 기촉법 제24조 제1항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제3차 협의회의 신규자금지원 안건에 반대하고 G에 대한 채권 합계 2,779,878,026원(= 미수금 원금 2,714,000,000원 + 2010. 9. 3.까지 연체이자 65,878,026원)에 대한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안건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들과 사이에 채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피고(반소원고)는 위 안건에 찬성한 원고들에 대하여 당시 G에 대한 무담보채권의 회수율 19.2%로 계산한 채권 매매대금 533,736,580원(= 2,779,878,026원 × 19.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설령 피고(반소원고)가 정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반소원고)가 위 2,779,878,026원의 채권 외에 추가로 287,042,843원의 채권을 양수하게 될 것이므로,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채권 합계 3,066,920,869원(= 2,779,878,026원 + 287,042,843원)에 대한 매매대금 588,848,806원(= 3,066,920,869원 × 19.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의 정산금 청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위 매매대금 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을 하고, 반소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들의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을 포함한 G의 채권금융기관들이 구성한 이 사건 협의회는 2010. 7. 20. 제1차 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의 손익정산은 2010. 7. 15.을 기준일로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한 사실, 이 사건 협의회는 2010. 8. 27. 제3차 협의회에서 위 처리기준과 유사한 내용으로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의 손익정산 기준을 정한 이 사건 처리기준을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 을가 제4 내지 6호증, 을나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협의회에서 탈퇴한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이 손익정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손익정산금의 액수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자유험약 제8조가 준용하는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과 이 사건 협의회가 의결한 이 사건 처리기준은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의 손익정산 시점에 대하여 ‘협의회에서 공동관리절차 중단, M&A 등 손익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손익을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손익정산 방법에 대하여 ‘채권양수도, 현금 정산 등 손익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협의회에서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채권금융기관들이 부담하는 손익정산의무는 이 사건 협의회 의결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이 위 협의회를 탈퇴하기 전까지 손익정산의 시점 및 방법에 대한 의결이 없었다면,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이 당연히 손익정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17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협의회는 2010. 7. 20. 제1차 협의회에서 ‘손익정산은 2010. 7. 15.을 기준일로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나, 이는 추후 손익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적용할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이 각 제3차 및 제5차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고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협의회에서 탈퇴할 때까지 이 사건 협의회가 별도의 손익정산 시점이나 방법을 의결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협의회는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서 2011. 7. 7.을 기준으로 1차 손익정산을 한 다음 2013. 4. 30.을 기준으로 2차 손익정산을 하였는데, 그 당시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 점유비율은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의 채권액을 제외하고 산정되었는바, 이는 위 협의회에서 탈퇴한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은 위 1차 및 2차 손익정산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 채권회수 및 부담비율을 공정하게 달성하기 위한 손익정산의 필요성은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의 탈퇴 시점에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제1차

협의회에서 손익정산을 의결함으로써 손익정산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방법만 정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과 이 사건 처리기준이 이 사건 협의회로 하여금 손익정산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이 행사한 채권매수청구권은 채권금융기관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권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될 것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의 지위를 벗어나 의사에 반하는 공동관리절차나 채권행사의 유예, 채권재조정이나 신용공여 부담을 지지 않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구 기촉법 등에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인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 매매대금을 청구하고 공동관리절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반대채권자에게 오히려 손익정산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손익정산 시점과 방법 등을 정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협의회를 탈퇴한 채권금융기관들과 남아 있는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남아 있는 채권금융기관들의 결정에 따라 이미 탈퇴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손익정산의무를 사후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경영정상화가 이행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상 탈퇴한 채권금융기관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손익정산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4. 피고(반소원고)의 채권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반소원고)가 2010. 8. 27. 제3차 협의회의 신규자금지원 의결에 반대하고 2010. 9. 3. 위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구 기촉법 제24조 제1항 등이 정한 바에 따라 미수금 채권 2,714,000,000원 및 연체이자 65,878,026원 합계 2,779,878,026원에 대한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기촉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채권매수청구권은 반대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형성권이라 할 것인바, 피고(반소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피고(반소원고)와 위 의결에 찬성한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 채권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채권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권 매매대금의 결정

1) 살피건대, 구 기촉법 제24조 제2항은 ‘협의회는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의 매입가격 및 조건을 반대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에 찬성한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에 매수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채권의 매입상환의 가격 및 조건은 협의회와 반대채권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정하며, 제5항은 ‘제4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채권의 매입·상환의 가격 및 조건을 결정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협의회와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가 당해 부실징후기업의 가치 및 약정의 이행가능성을 평가하여 산정한 가격과 매입기관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반소원고)가 2010. 9. 3.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회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의 가치와 재산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인정한 적정한 가액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매대금 결정의 기준시점은 피고(반소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2010. 9. 3.이라고 볼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반소원고)가 매수청구한 채권의 범위와 적정한 매매대금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는 매수청구일인 2010. 9. 3. 기준 G에 대한 미수금 채권 원금 2,714,000,000원 및 연체이자 65,878,026원 합계 2,779,878,026원에 대한 매수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협의회는 2010. 7. 20. 제1차 협의회 의결을 통해 채권금융기관들의 G에 대한 채권의 상환기한을 2010. 10. 15.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반소원고)도 위 의결에 찬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반소원고)는 위 채권 중 미수금 채권 원금 2,714,000,000원에 대하여서만 적법하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머지 연체이자 부분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반소원고)는, K회계법인이 작성한 ‘G 경영정상화방안 검토보고서(을가 제7호증)’에 기재된 무담보채권의 회수율 19.2%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K회계법인의 보고서는 이 사건 협의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L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갑 제13호증, 후순위채권 배당률 6.43%) 및 M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갑 제16호증, 후순위채무 청산배당률 3.75%)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2016. 7. 20. G의 청산가치 및 무담보채권의 회수율에 대한 감정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런데 감정인 N는 2017. 9. 12. 감정보고서를 제출하여 ‘감정범위 제한 등의 사유로 무담보채권의 회수율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감정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워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변론의 진행경과와 더불어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반소원고)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의 매매대금은 매수청구일인 2011. 9. 3.을 기준으로 G의 청산가치에 기초해 산정한 무담보채권의 회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것인데, 피고(반소원고)가 주장하는 K회계법인의 보고서(을가 제7호증)는 이 사건 협의회에서 위 보고서에 기재된 무담보채권의 회수율 19.2%를 근거로 매매대금을 산정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K회계법인도 ‘이 사건 협의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가격산정에 청산가치 회수율 적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2018. 6. 8. 작성된 M회계법인의 보고서(갑 제16호증)는 G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되고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원고 A의 의뢰에 따라 제한적인 자료를 근거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적용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다만 감정인 N가 제출한 2017. 9. 12.자 감정보고서는 ‘L회계법인의 보고서(갑 제13호증)에 반영되지 않은 우발채무가 존재하고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합리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인바, L회계법인의 보고서에 일부 우발채무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보고서는 피고(반소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인 2010. 9. 3.에 근접한 2010. 12. 31.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제3차 협의회 일자인 2010. 8. 27.을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있고, 원고들도 2016. 2. 2.자 준비서면에서 ‘위 L회계법인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미 G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되어 객관적인 관련 자료 등이 남아 있지 않은 이상, 위 L회계법인의 보고서에 기재된 후순위채권 배당률 6.43%를 무담보채권의 회수율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채권 매매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보인다.

다) 결국 L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피고(반소원고)의 채권 매매대금을 계산하면 174,510,200원(= 미수금 채권 원금 2,714,000,000원 × 무담보채권의 회수율 6.43%)이 된다. 나아가 구 기촉법 제24조 제2항 후문은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에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매매대금의 이행기는 G의 경영정상화 이행기간이 종료된 때라고 볼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자율협약이 종료된 2011. 6. 30.에 경영정상화 이행기간도 종료되어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그 다음날인 2011. 7. 1.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G에 대한 회생절차가 신청된 2011. 6. 3. 이행기가 도래함을 전제로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자율협약 제2조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때에 위 자율협약이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채권 매매대금 174,510,2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날인 2011. 7. 1.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유석동, 판사 김준영, 판사 장윤실

별지 1.

피고 의 순이익산출 계산 내역

기업명	순이익산출계산내역(2010.7.15)		정산사명세금산출내역(2010.8.27)		증감합계	순이익산출	
	과입 계	점유비 (X)	과입 계	점유비 (X)		정산주 최종잔액 (Y) = 10.827 송 과입 X (X)	정산금액 (Y - (Y) - (Y))
한국무역보험공사	81,329,390,130	28.9%	81,921,232,923	27.0%	(1,408,157,207)	87,622,659,364	5,701,426,441
	70,082,318,167	24.3%	77,451,860,865	25.5%	7,369,542,698	73,693,076,147	(3,798,784,717)
	53,325,133,958	18.5%	60,506,666,013	19.9%	7,181,532,055	56,072,533,845	(4,434,132,168)
한국수출입은행	30,853,878,650	10.7%	34,972,240,627	11.5%	4,118,361,977	32,443,521,965	(2,528,718,663)
기업은행	16,149,999,972	5.6%	16,150,000,000	5.3%	28	16,982,074,921	832,074,921
기술보증기금	7,000,000,000	2.4%	7,000,000,000	2.3%	-	7,360,651,681	360,651,681
	5,508,730,978	1.9%	5,508,730,978	1.8%	-	5,793,601,512	283,870,534
	3,443,517,161	1.2%	3,443,517,161	1.1%	-	3,620,932,911	177,415,750
	4,112,758,436	1.4%	4,066,000,000	1.3%	(46,758,436)	4,324,654,614	258,654,614
	5,000,000,000	1.7%	5,000,000,000	1.6%	-	5,257,608,344	257,608,344
	7,054,840,505	2.4%	4,855,427,240	1.6%	(2,199,413,265)	7,418,117,660	2,562,890,420
	2,854,000,000	1.0%	2,714,000,000	0.9%	(140,000,000)	3,001,042,843	287,042,843
합계	288,715,567,957	100.0%	303,590,675,807	100.0%	14,875,107,850	303,590,675,807	-

별지 2.

파로 의 순익정산금 계산 내역

기관명	순익정산기준재원(2010.7.15)		정산시점재정신액(2010.11.8)		증감합계	순익정산	
	재원 계	점유비 (%)	재원 계	점유비 (%)		정산후 최종잔액 (3) = *0.118 중 재원 x (3)	정산금액 (4) = (3) - (2)
한국무역보험공사	83,329,390,130	29.2%	106,856,546,506	33.6%	23,527,156,376	92,766,209,527	(14,090,336,979)
	70,082,318,167	24.5%	76,749,478,083	24.1%	6,667,159,916	78,018,943,869	1,269,465,786
	53,325,133,958	18.7%	42,218,848,114	13.3%	(11,106,285,844)	59,364,055,612	17,145,207,498
한국수출입은행	30,853,878,650	10.8%	45,751,719,436	14.4%	14,897,840,786	34,347,993,752	(11,403,725,664)
기업은행	16,149,999,972	5.6%	16,838,747,392	5.3%	688,747,420	17,978,942,111	1,140,194,719
기술보증기금	7,000,000,000	2.4%	7,000,000,000	2.2%	-	7,792,730,340	792,730,340
	5,509,730,978	1.9%	5,509,730,978	1.7%	-	6,133,692,537	623,961,559
	3,443,517,161	1.2%	3,443,517,161	1.1%	-	3,833,485,808	389,968,647
	4,112,738,436	1.4%	4,066,000,000	1.3%	(46,738,436)	4,578,516,778	512,516,778
	5,000,000,000	1.7%	5,000,000,000	1.6%	-	5,566,235,957	566,235,957
	7,054,840,505	2.5%	4,800,000,000	1.5%	(2,254,840,505)	7,853,781,378	3,053,781,378
합계	285,861,567,957	100.0%	318,234,587,670	100.0%	32,173,019,713	318,234,587,670	-

별지 3.

표고 의 수익정신금 계산 내역

기관명	수익정산기초채권(2010.7.15)			정산시점채권잔액(2010.11.5)			수익정산	
	채권 개	원유비 (%)	채권 액	원유비 (%)	종감금액 (㉑) = ㉒ + ㉓ 잔액 × ㉑	정산유 최종잔액 (㉑) = ㉒ - ㉓	정산금액 (㉑) = ㉒ - ㉓	
한국무역보험공사	83,329,390,130	29.2%	106,856,546,506	31.6%	23,527,156,376	92,766,209,527	(14,090,136,979)	
	70,082,218,167	24.5%	76,749,478,083	24.1%	6,667,159,916	78,018,943,869	1,269,465,786	
	53,325,133,958	18.7%	42,218,848,114	13.3%	(11,106,285,844)	59,364,055,612	17,145,207,498	
한국수출입은행	30,853,878,550	10.8%	45,751,719,436	14.4%	14,897,840,786	34,347,993,752	(11,401,725,684)	
기업은행	16,149,999,972	5.6%	16,838,747,392	5.3%	688,747,420	17,978,942,111	1,140,194,719	
기술보증기금	7,000,000,000	2.4%	7,000,000,000	2.2%	-	7,792,730,340	792,730,340	
	5,509,730,978	1.9%	5,509,730,978	1.7%	-	6,133,692,537	623,961,559	
	3,443,517,161	1.2%	3,443,517,161	1.1%	-	3,833,485,808	389,968,647	
	4,112,758,436	1.4%	4,066,000,000	1.3%	(46,758,436)	4,578,516,778	512,516,778	
	5,000,000,000	1.7%	5,000,000,000	1.6%	-	5,566,235,957	566,235,957	
	7,054,840,505	2.5%	4,800,000,000	1.5%	(2,254,840,505)	7,853,781,378	3,053,781,378	
합계	285,851,567,957	100.0%	318,234,587,670	100.0%	2,373,019,713	318,234,587,670	-	